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영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76

발의연월일: 2023. 2. 2.

발 의 자:최영희·구자근·김상훈

김성원 · 이헌승 · 이 용

김승수 · 정희용 · 권명호

서일준 · 임이자 의원

(11일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·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노인정책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·평가(이하 "노인정책영향평가"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노인 관 런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노인정책영향평가) ①
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
	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
	<u>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</u>
	"노인정책영향평가"라 한다)하
	고,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
	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
	한다.
	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
	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